

# 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



농림부는 최근 2002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발표했다. 특히 올해는 양계발전 종합대책이 마련된 후 시행되는 첫 번째 농림사업으로 계육업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 이에 따라 본지는 2002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육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지난해에 이어 발췌,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

〈편집자주〉

## 1. 규격닭 출하촉진사업

1. 목 적
  - 육계 출하체중을 증대하여 닭고기 생산비 절감
  - 닭고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증대
2. 시책 및 추진방향
  - 육계계열화업체와 계열농가를 통한 수출용 닭고기 생산체계 확립
  - 육계를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
3. 근거법령
  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 강구)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량		-	-	-	10백만수	90
사업비	계	-	-	-	5,000	40,000
	보조	-	-	-	-	-
	융자	-	-	-	5,000	40,000
	지방비	-	-	-	-	-
	자부담	-	-	-	-	-

## 5. 2002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가. 사업내용

- 사업대상자 - 육계계열화업체 중 닭고기를 수출하는 업체 또는 농가
- 지원단가 : 규격닭 출하체중 2.5kg이상시 500원/수
- 지원조건 : 1년 거치 상환, 연리 5%
- 지원내용 - 육계계열화업체 중 닭고기를 수출하는 업체 또는 농가에 경영자금 지원

나. 2002년도 사업비 내용

(단위:백만원)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					
		합계	축발기금			지방비	자부담
			계	보조	융자		
계	50개소	5,000	5,000	-	5,000	-	-
규격닭 출하 촉진자금	50	5,000	5,000	-	5,000	-	-

〈 추진체계 〉

가.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지사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농림부 : 축산경영과(02-500-1906~7)

다. 사업시행

○자금지원신청(대상농가 → 시·군)

- 육계계열화업체 중 닭고기를 수출하는 업체 또는 농가는 규격닭 출하실적 확인서를 수출업체에서 받아 시·군에 자금 신청

○신청서 검토 및 제출(시·군 → 시·도)

-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신청금액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농가자금신청서를 시·도에 제출  
- 시·군은 농가 또는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자금지원신청서 원부를 시·도로 제출

○농가별 출하실적 및 규격닭 수수확인(시·도 → 농림부)

- 시·도는 시·군에서 통보한 농가신청서, 계열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농가별 실적을 대조 확인하여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

○도별 대출한도 배정(농림부 → 농협중앙회 → 도 지역본부 → 조합)

- 농림부에서는 농협중앙회에 도별 대출한도 배정  
- 농협중앙회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도 지역본부, 조합 배정

○대출실행(조합)- 지원대상자에게 상환기한 등을 명시한 융자 안내서 통보

〈 행정사항 〉

○사후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시달- 농가자금신청서, 규격닭 출하실적 확인서 등

6. 200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

○2002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

2. 닭고기 부분육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

1. 목 적

- 닭고기의 부분육·냉장육 유통체계 활성화로 닭고기 수출확대
  - 닭의 위생적인 도축·가공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닭고기 공급
2. 시책 및 추진방향
- 닭고기 수출전용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 확대로 닭고기 수출 확대
3. 근거법령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 강구)

4. 연도별 지원계획 (단위 : 백만원)

사업량		-	-	-	2개소	8
사업비	계	-	-	-	5,000	20,000
	보조	-	-	-	-	-
	융자	-	-	-	3,500	14,000
	지방비	-	-	-	-	-
	자부담	-	-	-	1,500	6,000

5. 2002년도 사업시행요

< 사업개요 >

가. 사업내용

○ 사업대상자

- 육계계열화업체중 도계장을 보유하고 냉장 닭고기 수출을 하고자 닭고기 가공시설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

○ 지원한도액 : 2,500백만원(융자 70%, 자담 30%)

○ 지원조건 : 연리 5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○ 지원내용 - 닭고기 부분육 가공을 위한 시설설치자금(절단, 발골, 포장, 보관 등의 시설)

나. 2002년도 사업비 내용

(단위:백만원)

2002년도 사업비 내용								
계	2개소	5,000	3,500	-	3,500	-	1,500	
부분육 시설	2	5,000	3,500	-	3,500	-	1,500	

< 추진체계 >

가.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지사(시장, 군수)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 농림부 : 축산경영과(02-500-1906~7)

○ 시·도(시·군) : 축산업무담당과

다. 사업절차 및 시행

○ 사업대상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농림부에 사업을 신

청하고, 농림부는 시·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

-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림사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·군에 신청
- 사업대상자 → 시·군 → 시·도 → 농림부

○농림부는 시·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시·도에 확정 통보하고, 시·도지사는 시·군에 사업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고, 시·군은 사업대상자에게 확정 통보

○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추진

라.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

○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『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』에 따름

〈 행정사항 〉

가. 사후관리

- 시·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여부를 확인
- 사업 대상자는 시·도지사에게 분기별 추진실적을 다음분기 15일까지 보고
-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 (사진 첨부 등)
- 시·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성고 확인 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업무를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)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음
- 사업대상자는 동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간내 시행(자부담의 경우 제외)하되,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함

6. 200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

○2002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

**3. 닭고기 체인점 설치지원사업**

1. 목 적

○닭고기 브랜드육의 판매망을 구축하여 국내산 브랜드육과 수입육의 시장을 차별화를 통해 국내산 닭고기 판매촉진

○닭고기의 위생적인 판매망 구축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○닭고기의 브랜드화 촉진

○위생적인 닭고기 판매망 구축

3. 근거법령

○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 강구)

(단위 : 백만원)

4. 연도별 지원계획

구분	'92-'99년	2000년	2001년	2002년(예산안)	2003년이후	
사업량	-	-	-	10개소	90	
사						
업	계	-	-	-	9,750	87,750
비	보조	-	-	-	-	-
	용자	-	-	-	6,825	61,450
	지방비	-	-	-	-	-
	자부담	-	-	-	2,925	26,325

5. 2002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 사업개요 〉

가. 사업내용

○사업대상자

- 생산자 단체로서 닭고기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고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영 판매장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

○사업량 및 사업비 : 10개소, 9,750백만원(용자 70%, 자담 30%)

- 개소당 사업비 : 975백만원(용자70%, 자담 30%)

○지원조건 : 연리 5%,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
○지원내용

- 판매장 시설비, 주방설비 및 기기 등 시설비  
- 점포구입비(임차료 포함)

나. 2002년도 사업비 내용

(단위:백만원)

계	10개소	9,750	6,825	-	6,825	-	2,925
닭고기 체인점	10	9,750	6,825	-	6,825	-	2,925

〈 추진체계 〉

가. 사업주관기관 : 농협중앙회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 농림부 : 축산경영과(02-500-1906~7)

다. 사업 시행절차

○사업주관기관은 사업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능력 및 매장 입지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부에 보고

-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, 추진계획(일정), 연차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

라.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

○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융자금 신청

○사업주관기관은 설계·시공·준공확인·자금집행 및 정산사항에 대하여 『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』등에 의하여 추진

〈 행정사항 〉

○사후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에서 정하여 시행

○사업실적보고

-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실적(정산)을 사업완료후 지체없이 농림부에 보고

○사후관리

-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한편,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0일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
-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

#### 6. 200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

- 2002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

### 4. 축산물자조금조성지원사업

#### 1. 목 적

-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

##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
-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별로 자조금 조성액의 100% 지원

#### 3. 근거법령

-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
- 축산법 제3조

#### 4. 2002년도 사업시행요령

##### 《사업개요》

##### 가. 사업내용

##### 1) 배 경

- '92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축산(젓소, 돼지, 닭)분야 자조금 사업 실시
-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(2000.6.1)에 의거 축산물 자조금 근거 규정 마련

##### 2) 자조금 조성 대상품목

- 한우, 젓소, 돼지, 닭, 오리, 꿀벌

##### 3) 자조금조성단체의 형태

-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 :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비영리단체

##### 4) 보조금지급대상 자조금 조성단체의 범위

- 보조금 지급대상의 자조금조성단체의 자격
  - '01년도 축산분야 해당품목의 자조금 사업을 수행한 사단법인

##### 5) 자조금의 용도

-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
- 판로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
- 품질향상·수급조절을 위한 교육
- 유통정보 제공 및 유통정보화, 관측조사, 기술 및 공동상표의 개발 연구

○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 및 자조금 운용상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

6)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

○ 자조금 및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

- 구성(15인 이내) : 생산자 11인 이내(위원장 : 자조금조성단체의 장), 학 계 · 공무원 · 소비자 · 유통전문가 각 1인 이내

- 기능 : 사업계획안 및 자조금관리규정안 등 자조금조성단체의 자조금 관련 주요 업무 심의의결

- 회의 :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,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

○ 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음(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장)

○ 연간 자조금 조성액(보조금 제외)의 3% 해당액(연간 3천만원) 범위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의 운영경비 사용

나. 2002년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축산자조금	1,761	4,446	2,223	2,223 (50%)	-	-	2,223 (50%)

《추진체계》

가. 사업주관기관 : 농림부

○ 낙농·양계 자조금 : 축산경영과

○ 양돈자조금 : 축산물유통과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0-1906) : 젓소, 닭

○ 농림부 축산물유통과(02-500-1916) : 돼지

다. 사업시행절차

(1) 자조금 조성의사 결정방법

○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및 규모를 갖춘 자조금조성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, 그 구성원 중 10인 이상이 “자조금조성계획안”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

○ 자조금조성계획안에 대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당해 단체 자조금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조금 조성의사 확정(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중에 법인이 있을 경우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는 의결에 참여하기 전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인 구성원이 결정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함)

- 자조금 조성의사는 1회계연도(1. 1.~12. 31.) 단위로 결정함

(2) 자조금관리규정

○ 자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조금 관리규정 작성

- 목적, 사업, 명칭, 사무소의 소재지, 회원의 자격(가입, 탈퇴, 제재사항 등), 회원의 탈퇴, 제명시 납입금 계산방법, 납입금의 조성방법, 납입금액, 수납장소,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,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,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, 의결(집행)기관 및 의결(집행)방법, 기구, 인원 및 경비의 범위, 자조금특별회계 설치 및 회계처리 사항

(3) 사업계획의 승인

- 보조금을 지급받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자조금관리규정을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신청
  - 자조금사업계획서에는 자조금의 조성 규모 및 조성방법, 전년도 생산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전전년도 기준) 및 자조금 거출 동의(대의원회 결정포함) 관련 서류 첨부
-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관리규정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확정(사업계획 승인).

(4) 보조금 교부 절차 등

- 자조금사업단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,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당해 단체 자조금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의 내역서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 주관기관에 보조금 신청
-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자조금 조성액(당해 품목 연간 생산액의 1% 해당액)의 100% 상당액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

(5) 사업시행

자조금조성단체는 자조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

《행정사항》

-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의 보조금교부결정통보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,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
  -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령,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
-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자조금의 보조금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고,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를 2003.1.31일까지 보고(별지1)

5. 200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사업주관기관(농림부 축산경영과, 축산물유통과)

나. 신청자격 :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비영리단체(사단법인)

다. 신청절차

- 2002. 3. 31 까지 사업주관기관에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 2002. 4. 20.까지 예산요구 \*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, 자조금관리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2002년 사항 참조(다만,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



-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, 정책자금(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) 기지원 유통가공시설 보유사업자, 경주마사육 축산농가,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자
- 개보수 및 운영자금에 한하여 지원

※ 지원제외

- 해당 사업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
- 임대,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
-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
-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법인·유통가공업자(관광농원 포함)·금융기관 총부채(금차대출신청액 포함)가 3억원이상인 개인조합원 5인미만인 영농조합법인
-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 등록(제재)중인 경우
- 수산업, 임업(표고버섯 포함)종사자

2) 지원조건

○ 지원자금의 종류

- 원예특작 축산분야 : 시설 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종합 지원
- 기타 분야 : 개보수 운영자금만을 지원

○ 지원조건

- 금 리 : 연리 5.0%
- 상환조건

· 시설자금 3~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(\* 원예특작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, 축산 및 철골(유리 혹은 경질)온실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·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
·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(단, 인삼식재자금은 연도별로 3~5년 거치 일시상환)

○ 자금용도 : 상세한 것은 [6. 세부사업내용] 참조

- 시설자금 : 생산 재배시설, 저장 유통 가공시설 및 증축자금, 토지매입자금,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, 온실기능향상시설 등

※ 저장 유통 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

(예시) 농가가 생산시설에 부수하여 소형 저온저장고만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

※ 기존 시설물 및 기초성과수원 구입시 지원제외

※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

(세부사항은 부록 : 토지매입자금 지원관련 세부지침 참고)

※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

· 택지 도로 담 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 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(☞ 참고2)

·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

· 경작중인 농지이외의 토지(잡종지 등)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(토지에 시설설치 등 구체적

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)

-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
- 노지 300평미만, 시설부지 100평미만 및 매입규모가 전업농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
- 개보수자금 :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및 기계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 
(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추가 시설지원 가능)
- ※ 번식용 한우암소 및 착유우(한우, 착유우 모두 암송아지, 육성우만 해당)는 고정 자산으로 간주하여 개보수자금에 준하여 지원
- 운영자금 :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(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(구매)소요액은 지원제한)
- ※ 토지임차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중 장기, 단기자금으로 지원가능
- ※ 가족임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시에는 지원 가능
- 지원한도 :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 단, 금차투자사업이 전업농규모(법인의 경우 구성임원 수만큼 승하여 적용)를 초과할 경우 당해 초과사업비 및 운영자금은 지원제한
- ※ 20백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(에너지절감시설, 온실기능향상시설 포함)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가능
- ※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당 35,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
- 관인계약서상 시가가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

**나. 사업추진체계**

- 1) 대출취급기관 : 농업협동조합중앙회
- 2)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(이하 "취급사무소")
  - 농협 시 군 지부등 중앙회 소속 각급 사무소
  -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지역농 축협, 품목별 업종별 조합(이하 회원조합)
  - ※ 각 취급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원예특작 축산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업무를 취급함
- 3) 자금운용부서 : 농림부 협동조합과(02-500-1697)
- 4) 사업담당부서 :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(02) 500-2683~4  
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(02) 500-2685~6  
 축산국 축산정책과 (02) 500-2688
- 5) 대출기관 연락처
  - 농협중앙회 : 농업금융부 농업종합자금추진단 (02) 397-6533~39
    - 시 도지역본부 : 정책자금 담당과
    - 시 군지부 : 농업금융 담당과
  - 회원조합(별도 공시) : 정책자금 담당자

**다. 자금지원결정**

- 1) 사업신청
  -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취급사무소에 신청
  - 취급사무소가 아닌 농 축 삼협은 신청서류를 해당 취급사무소로 이첩
  - ※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등은 취급사무소에서 안내하되 행정 지도기관에도 비치 안내하여 농업인

편의 도모

※ 사후관리 및 점검 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

○신청시기 : 연중 수시

2) 자금지원결정

○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

- 농.축.삼협은 사전에 지역농업발전계획이나 지역특화시책,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해 시 군과 사전 협의

-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적격여부,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한 후 인허가 등 행정사항, 기술검토 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 신망 등에 관하여 해당 시 군의 의견을 요청

※ 운영자금이나 개보수자금 신청의 경우는 시 군 의견조회를 하지 않음.

○취급사무소는 종합자금 지원상황을 수시로 해당 시 군청에 통지(서식1)

- 시 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, 추가 지원 등 변경사항을 농 축 삼협에 통지

3) 심사방법

○사업계획서 심사시에는 이 지침과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(재무 경영평가 포함)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

○토지매입자금의 경우는 전체 사업계획에 비추어 토지매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청취

〈 중점평가 항목 〉

-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
-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
- 재무구조의 건전성

〈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 가점 부여 고려사항 〉

- 농작물재해보험, 가축공제 가입농가
  - 친환경농산물 표시농가(품질인증 등)
  - 쌀생산 품질인증 농가 및 법인은 가점 특별우대
  - 신지식농업인, 새농민상 수상자
  - 가축질병예방활동 참여 우수농가
  - 품질개선노력 : 규격돈생산, 거세축생산, 종축등록생산, 우수축출하, 1등급 원유생산 등
  - 기타 : 집유일원화 참여,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등
- 사업신청자가 희망하거나, 대상품목(축종) 또는 경영기술등이 농.축.삼협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농촌지도기관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함
-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 준비사항 등을 안내

및 지도

- 농업기술센터, 도 농업기술원,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연구소는 농.축.삼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, 경영능력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제공

〈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상황 〉

-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사업(지도계통 컨설팅, 농촌진흥청 주관) 157개 시 군 농업 기술센터의 기초 컨설팅팀과 9개 도농업기술원의광역컨설팅팀 운영중
-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(민간컨설팅, 농림부 9개도 주관)
- 농림부, 농촌진흥청 및 각 시 도는 소관 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,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과 일선취급사무소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각개인 기관 회사별로 전문분야, 컨설팅실적, 주요 경력 등

라. 자금대출

- 농업경영종합자금운용규정,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등 정책여신 관련규정과 각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자금대출
- 사업대상자가 소요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
- 이자는 1년 후취원칙

마. 사업검정과 사업비 정산

- 시설 개보수자금 중 용자지원금의 검정 정산은 농업경영종합자금운용규정에 따름(개 보수자금으로 지원하는 가축입식비의 검정 정산시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,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축등록을 하는 등 구입대상가축의 개체관리에 입각한 증빙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)
- 토지매입자금의 정산은 관인계약서와 토지취득관련 납세자료에 의함
-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 한우단체입식시에 축협에서 한우암소에 대해 발급한 매매증명서도 검정 정산의 증빙으로 인정

바.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

-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토지 시설.설비.장비등을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, 업종을 변경하여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,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
-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
- 부도, 폐업, 사업 포기,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-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가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처분통지를 받은 때
  - ※ 다만,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(시장 군수, 시 도지사)의 조사 확인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당초 상환조건대로 상환하게 할 수 있음

- ※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름
- ※ 취급사무소는 대출약정체결시에 상기 [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]를 지원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약정서에 첨부해야 함

**사.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**

- 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세부시행지침이 수립 통보되는 즉시 이를 해당 시 군청 농정담당부서에 통지 송부
- 각 취급사무소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-채무기록등 금융정보와 거래기록 등 보유정보를 활용한 일상적 사후관리를 기반으로 연1회 이상 [경영실태조사] 실시
- 농협중앙회는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추진실태를 점검하고, 해당 결과를 농협에 감사지도부 및 농림부에 보고
- 시 군 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은 농 축 삼협 지도업무담당부서 및 민간컨설팅전문가들과 협조, 경영체의 경영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 경영지도 추진
  - 특히, 농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 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
- 대출취급기관과 행정 지도기관이 각각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언, 관련 정보 제공,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사업준비에 노력
  - 행정 지도기관은 시 군청, 농업기술센터 등에 전담상담인력을 지정
  - 대출취급기관과 행정 지도기관의 상담장구에는 서식 7호와 서식 7-1호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 결과를 기록
- 지원대상 농가 선정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 평가 우대(가점 5점 부여)
- 전문인력 확충
  - 농협중앙회에 전문심사역 10명으로 증원('01: 5명)
- 연1회 실시하는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출취급기관이 단계별 컨설팅 실시
- 시 군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, 제도개선사항, 민원사항 등을 시 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
-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실적을 서식 2호 내지 서식 6호에 따라 주기별로 기간 료후10일 이내에 농림부와의 시 도, 시 군에 보고 또는 통보
  - 2002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2003. 3. 20까지

**아. 기 타**

-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 농지법 축산법 등 관련법규에 따름
- 정부시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◯